

2021년 제8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0-4 외 7필지(아파트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8.19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송도센트럴1지구 지역주택조합 외 1인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0-4	관련지번	20-5, 20-6, 20-7, 20-8, 20-9, 20-10, 20-11	
	대지면적	12,293.3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	준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6,141.2504㎡	건폐율	49.96%	층수 지하 : -3층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,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0동
	최고높이	37.5m	용적률	279.73%	연면적 합계 62,296.5118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조치계획서-7에 제시한 <보정계수에 대한 상세안> 및 해당구간에 대한 내용을 착공 시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○ 조치계획서-10,11 관련 - 기본근이 HD@600인 모든 슬래브의 최대 슬래브 철근가격 제한 @450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보완할 것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